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6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김남희·김용민·김 윤

김성환 • 권칠승 • 백승아

임미애·장종태·김한규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 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신속한 게시글의 삭제 지원이 불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 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 피해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촬영물등"을 "촬 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촬영물등에"를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 인정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촬영물등과"를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촬영물등"을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성착취물"을 "청소년성착취물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촬영물등 삭제지원"을 "촬영물 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촬영물등 삭제지원"을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삭 제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촬영물등 삭제지원"을 "촬영물 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지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화방,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말한다) 등에 게시된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삭제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 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 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촬 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영물등 피해자"라 한다)-----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대화방, 게시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말한다) 등에 게시된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 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삭제를 함께 지원할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u>촬영물등에</u>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u>촬영물등과</u>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촬영물등

<u>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촬영물등 및 촬영물등</u>
<u>피해자 개인정보</u>
<u>.</u>
③
<u>촬영물등 및</u>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에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와
1
<u>촬영물등 및 촬영물등</u>
피해자 개인정보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아동·<u>청소년성착취물</u>
- ④ 제1항에 따른 <u>촬영물등 삭</u>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 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부단한다.
-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u>촬영</u> 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 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촬</u>
 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2				
<u>청소년성착취물 및 촬</u>				
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④ <u>촬영물등 및 촬</u>				
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지원				
⑤활영				
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				
정보 삭제지원				
⑥활				
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				
인정보 삭제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